

『호주, 2026년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No Time to Waste) 법안』

2026. 07. 23.

TBT 통보여부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통보국	호주	전년도 수출액 (천불)	9,877,818 천불 (2025)
작성기관	한국화학융합 시험연구원	문의처	tbt@kotica.or.kr

규제 요약서

□ 규제 개요

- (규제요지) 연방 정부가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국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PR)를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법안으로, 장관이 모법인 「2020년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에 따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요건을 규칙(rules)으로 제정하도록 의무화함
- (적용범위) 전 제품

□ 주요 내용

- (주요 내용) 2030년까지 달성할 최소 목표로 포장재의 재사용 · 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성 확보, 플라스틱 포장재 70% 재활용 · 퇴비화, 재활용 함량 50% 이상(그중 호주산 30% 이상), 문제성 ·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을 제시하며, 라벨의 환경 영향 · 폐기 정보 표시와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 부과를 제도의 목표로 규정함
- (인증절차) 책임자가 이행할 요건은 규칙에서 확정되며, 장관은 규칙 제정 전 모법상 제품책임 기준의 충족 등을 인정하여야 함

□ 주요국 규제동향 비교

- (EU)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EU) 2025/40」이 2026. 08. 12.부터 적용되며, 2030년 기준 플라스틱 포장재 유형별 재생원료 함량 10~35%를 규정함
- (영국) 「2024년 생산자책임의무 규정」에 따라 등록 · 보고 및 처리비용 납부 의무를 부과하며, 재생 플라스틱 30% 미만 포장재에 플라스틱 포장세를 부과함

- (캐나다) 주·준주별 제도 중심으로, 온타리오주는 2026. 01. 01. 부터 생산자가 블루박스 서비스를 전면 책임짐

□ 기술규제 영향분석

- (규제 영향 분석 결과) 요건이 향후 규칙에서 확정되어 현 단계의 영향은 확정되지 않으나, 재활용 함량 중 30% 이상을 호주산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요건은 비교 대상국에서 확인되지 않는 원산지 기준으로 내국민대우 및 불필요한 무역방해 관점의 검토 여지가 있음
- (권고사항) 법안 심의 경과 및 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고, 호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자의 책임자 해당 여부와 자사 포장재의 재질·재생원료 사용 현황을 사전에 파악할 필요가 있음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 (원료 조달처 제한) 호주산 재생원료 요건에 따라 국외 조달분으로는 해당 요건을 충족할 수 없어 현지 조달처 확보 및 단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 (설계·표시 변경 부담)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의 포장재 재설계, 라벨 변경에 따른 인쇄판 교체 및 기존 재고 처리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대응 방안

- 중소기업은 현지 수입자의 책임자 해당 여부 확인 및 계약 단계의 비용 부담 협의, 중견기업은 수출 품목별 포장재 사양 정리와 현지 재생원료 조달 가능성 검토, 대기업은 공급망 단위 관리 체계 구축과 규칙 제정 단계의 의견 개진이 필요함

목 차

요약문	1
I. 규제 개요	2
II. 규제 세부 내용	4
III. 관련 인증 정보	7
IV. 주요국 규제동향 및 규제수준 비교	11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1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15
V. 예상 애로사항 및 파급효과	16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16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20
VI. 대응 방안	21
참고 1 참고자료	22
참고 2 규제원문(전문) 번역본	23

요 약 문

규제명	영문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for Packaging (No Time to Waste) Bill 2026	
	국문	2026년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No Time to Waste) 법안	
WTO/TBT 통보문 번호	미통보	통보국	호주
채택(예정)일	미정	시행현황	제정 초안
시행(예정)일	미정(국왕 재가일 다음 날)	통보일(고시일)	미통보
HS Code	전 제품	의견수렴 마감일	의견수렴 미진행
총 수출액 (천불)	709,033,000 천불 (2025)	對발행국 수출액 (천불)	9,877,818 천불 (2025)
중소기업 주력 수출 품목 여부	대상		
규제주요내용	해당부처	호주 의회(Australian Parliament)	
	규제목적	연방 정부가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국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장관이 모법인 「2020년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에 따라 제도 수립에 필요한 요건을 규칙(rules)으로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2030년까지 달성할 최소 목표로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성 확보, 플라스틱 포장재 70% 재활용·퇴비화, 재활용 함량 50% 이상(그중 호주산 30% 이상), 문제성·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을 제시함	
심층분석 결과 (종합 의견)		현 단계에서 기업에 적용되는 요건 및 직접 준수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 다만 재활용 함량 중 30% 이상을 호주산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요건은 주요국에서 확인되지 않는 원산지 기준이므로, 자사 포장재의 재생원료 사용 현황에 대한 사전 확인이 필요함	
대응여부	예상기업애로	호주산 재생원료 확보에 따른 조달처 제한과 포장재 재설계·라벨 변경 부담이 발생함. 또한 요건의 구체적 수준이 규칙 제정 전까지 미확정 상태여서 사업 계획 수립에 불확실성이 존재함	
	대응방안	중소기업은 현지 수입자의 책임자 해당 여부 확인, 중견기업은 수출 품목별 포장재 사양 정리와 현지 재생원료 조달 검토, 대기업은 공급망 단위 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함	

□ 도입배경

- 연방 정부가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국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EPR)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기 위해 「2026년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No Time to Waste) 법안」이 호주 상원에 제출되어 제1독회를 마침
- 동 법안은 포장재의 책임자가 해당 포장재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관리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고, 포장재 및 미사용 원료 플라스틱 (virgin plastics)의 사용을 감소시키며, 자원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호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함

□ 규제 요지

- 본 법안은 책임자에게 준수 의무를 직접 부과하지 않고, 장관이 모법인 「2020년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에 따라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는 규칙(rules)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음
- 자원 회수 및 재활용률 제고를 위해 호주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2030년까지 달성하여야 할 최소 목표를 제시하고 있음
 - 모든 포장재는 플라스틱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재활용 함량을 50% 이상, 그중 호주산 재활용 함량을 30% 이상 포함하여야 함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70%는 재활용 또는 퇴비화되어야 하고, 문제성 및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경우 단계적으로 퇴출되어야 함
- 그 밖에 포장 제품의 라벨을 통한 환경 영향 및 폐기 정보 제공, 재활용 저해 재료·첨가제의 금지 또는 단계적 퇴출, 에코디자인

기준에 따른 제조, 책임자에 대한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등을 제도의 목표로 명시하고 있음

- 규칙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정되어야 하며, 제도 시행일(scheme commencement day)은 본 법안 시행일부터 3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임

☐ 적용대상

- 전 제품
 - 호주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이며, 라벨 요건과 관련하여 포장 제품(packaged products)이 포함됨

☐ 시행일

- 국왕 재가일 다음 날

2

규제 세부 내용

□ 개요

- 본 법안은 모법인 「2020년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에 따라 하위 규칙을 제정하도록 의무화하여, 호주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국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수립하고자 함

□ 적용제품

- 전 제품
 - 호주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이며, 라벨 요건과 관련하여 포장 제품(packaged products)이 포함됨

□ 세부내용

- (적용 시점) 본 법안은 국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날 시행되며,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는 그로부터 3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제도 시행일)에 효력이 발생함
 - 다만 규칙은 유보 조항 또는 적용 조항의 규정을 포함하여 경과적 성격의 사항을 다룰 수 있음
- (규칙 제정 의무) 장관은 모법 제92조의 목적상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는 규칙을 모법에 따라 제정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은 장관이 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함
 - 장관은 특정 제품의 모든 책임자 또는 특정 책임자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명시할 수 있음
 - 본 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모법의 목적상 정의된 용어는 모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짐
- (제도 목표) 책임자가 포장재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관리 책임을

지도록 보장, 포장재 및 미사용 원료 플라스틱의 사용 감소,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료·첨가제를 적절한 경우 포장재 제조에서 금지하거나 단계적으로 퇴출, 에코디자인 모범 관행 기준에 따른 제조, 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 지원을 목표로 함

- **(2030년 최소 목표)** 자원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호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호주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2030년까지 다음의 최소 목표가 달성되도록 보장함
 - 모든 포장재는 플라스틱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가 가능하여야 하며, 최소 50%의 재활용 함량을 포함하고 그중 최소 30%는 호주산 재활용 함량이어야 함¹⁾
 -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70%는 재활용 또는 퇴비화되어야 하며, 모든 문제성 및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되어야 함
- **(라벨 표시)** 제도의 목표로서 포장 제품의 라벨에 해당 제품의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포장재의 올바른 폐기에 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함
- **(재정적 인센티브)** 제도의 목표로서 책임자가 포장재를 줄이고 에코디자인을 개선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며, 그 예시로 재활용 가능성 또는 제조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eco-modulated fees) 납부 요구 방식을 제시함
 - 재정적 인센티브 관련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에 명시된 요건은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 **(모범 적용의 일부 배제)** 규칙 제정 최소 12개월 전에 장관의 우선순위 목록에 제품을 통보하도록 한 모범 제93조 제(1)항 (d)호는 본 법안에 따라 제정되는 규칙에 적용되지 않음
 - 다만 모범상 그 밖의 제한은 그대로 적용되며, 여기에는 모범

1) all packaging (whether or not plastic) must include at least 50% recycled content, including at least 30% Australian recycled content;

제92조 제(2)항, 제93조 제(1)항 (a)호부터 (c)호까지 및 제94조에 따른 제한이 포함됨

- (국가 환경 보호 조치)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으로 인해 국가 환경 보호 조치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 해당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해서는 「1994년 국가 환경 보호 위원회법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Act 1994)」 제2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음
- (주 및 준주 법률과의 관계) 규칙은 제도가 해당 규칙에서 규정하는 주 또는 준주 법률을 배제하고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임을 규정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법률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책임자에게 요건을 부과하게 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됨
- (정기 검토) 장관은 제도 운영에 대한 정기 검토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첫 번째 검토는 제도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후 각 검토는 직전 검토 완료 후 5년이 종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함
 - 검토 실시자는 장관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접수 후 각 원의 15 회의일 이내에 보고서 사본이 의회 각 원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함

※ 본 법안이 별도의 하위 규칙을 두지 않고 기업이 준수하여야 할 요건이 모법에 따른 규칙에서 확정됨에 따라, 이하에서는 본 법안의 규정과 모법의 관련 절차를 병기하여 서술함

□ 인증 절차

- (요건의 확정 절차) 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은 본 법안이 아니라 장관이 모법에 따라 제정하는 규칙(rules)에서 확정되며, 장관은 특정 제품의 모든 책임자 또는 특정 책임자에 대하여 해당 요건을 명시할 수 있음
 - 모법은 규칙으로 특정 제품과 관련하여 하나 이상의 특정인에게 특정 행위를 하도록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록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행위는 모법의 목적과 관련되어야 함
- (규칙 제정 전 충족 요건) 모법에 따라 장관은 규칙을 제정하기 전에 다음 사항을 인정하여야 함
 - 해당 규칙의 제정이 모법의 목적을 증진할 것
 - 해당 제품에 대하여 제품책임 기준(product stewardship criteria)이 충족될 것
 - 제품 반환 지급금(product return payment)을 요구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제정이 해당 종류의 제품 또는 그러한 제품에서 발생한 폐기물의 재사용·재활용·회수·처리 또는 폐기를 안전하고 과학적이며 환경적으로 건전한 방식으로 촉진하고, 지급 의무자가 적절히 보상될 가능성이 있을 것
- (제품책임 기준) 모법상 제품책임 기준은 해당 제품이 둘 이상의 주 또는 준주에서 판매되고, 다음 중 하나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충족됨
 - 해당 제품에 유해물질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 해당 제품에 사용된 재료의 보전 또는 해당 제품 폐기물로부터의 자원 회수를 상당히 증대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해당 제품 또는 제품에 함유된 물질이 환경이나 인체 건강 또는 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상당히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는 경우
- (사전 통보 절차의 배제) 모범은 해당 제품에 관한 규칙이 아직 시행되고 있지 아니한 경우 규칙 제정 최소 12개월 전에 해당 제품이 장관의 우선순위 목록에 통보되었을 것 또는 통보 없이 규칙을 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하나, 본 법안은 해당 요건의 적용을 배제함
- 모범은 특별한 사정을 근거로 규칙을 제정하는 경우 해당 규칙의 설명서(explanatory statement)에 그 사정을 기재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나, 본 법안이 해당 요건 자체의 적용을 배제함에 따라 동 기재 의무도 발생하지 아니하는 구조임
- (헌법적 관련성) 모범은 규칙이 헌법상 법인의 작위·부작위, 헌법상 무역·상거래 과정에서의 작위·부작위, 또는 호주가 타국과 체결한 협정상 의무의 이행 중 어느 하나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도록 요구함
- 규칙에는 위의 세 근거 중 어느 근거에 따라 제정되었는지를 명시하여야 하며, 협정상 의무의 이행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협정을 특정하여야 함

□ 사후관리

- (시정 지시) 모범에 따라 감독관(authorised officer)은 모범 제92조 제(1)항의 목적상 제정된 규칙에서 특정된 자가 규칙상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였거나 준수하지 아니할 것으로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해당인에게 지시(direction)를 발할 수 있음
- 지시는 해당 사유에 대응하기 위하여 특정 기간 내에 특정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는 내용이어야 함
- 서면 지시에는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형사처벌 또는 민사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 기재되어야 함
- 지시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30

벌점단위(penalty unit)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으며, 이와 별도로 60 벌점단위의 민사벌이 적용됨

- 다만 서면 지시에 위 기재사항이 포함되지 아니하였거나, 구두 지시의 경우 감독관이 제재 가능성을 알리기 위한 합리적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때에는 미준수에 따른 책임이 적용되지 아니함
- (지시 방식) 모범상 지시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발할 수 있으며, 구두로 발한 경우에는 실행 가능한 한 신속히 서면으로도 발하여야 함
- 지시 상호 간에 저촉이 있는 경우 후행 지시가 우선하되, 연방 감독관의 지시와 주·준주 또는 제3자 감독관의 지시가 저촉되는 경우에는 연방 감독관의 지시가 우선함
- (제도 검토) 본 법안에 따라 장관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기 검토가 실시되도록 하여야 하며, 첫 번째 검토는 제도 효력 발생일부터 3년, 이후 각 검토는 직전 검토 완료 후 5년이 종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함
- 검토 실시자는 장관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장관은 접수 후 각 원의 15 회의일 이내에 보고서 사본이 의회 각 원에 상정되도록 하여야 함

□ 표시사항

- (라벨 정보) 본 법안은 제도의 목표로서 포장 제품의 라벨에 해당 제품의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포장재의 올바른 폐기에 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할 것을 규정함
- (모범상 근거) 모범은 규칙으로 제품에 대하여 규칙에 따른 라벨 또는 표시를 부착하도록 요구할 수 있고, 제품의 유통·재사용·재활용·회수·처리 또는 폐기와 관련한 정보 전달에 관한 요건을 명시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아울러 제품의 포장에 관한 요건 및 제품 설계에 관한 요건도 규칙으로 명시할 수 있음

□ 신청 시 유의사항

- (면제) 모범은 규칙으로 장관이 특정인을 규칙상 요건에서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할 수 있음
- (비용) 본 법안은 재정적 인센티브의 예시로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또는 제조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 (eco-modulated fees) 납부 요구 방식을 제시하고 있으며, 해당 요건은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됨
 - 모범은 이와 별도로 제품 반환 지급금 제도를 두고 있으며, 이는 타인이 재사용·재제조·재활용·회수·처리 또는 폐기를 위해 해당 종류의 제품을 반환하는 경우 규칙이 정한 금액을 그 타인에게 지급하도록 하는 것으로, 과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됨
- (위반 시 제재) 모범은 규칙상 요건의 적용을 받는 자가 해당 요건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위반으로 규정하고, 이에 대하여 형사처벌 또는 민사벌을 부과하도록 함
 - 형사처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20 벌점단위(penalty unit)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함
 - 민사벌: 240 벌점단위

1. 주요국 기술규제 동향

1

EU

- (현행 규정) EU는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지침 94/62/EC (Directive 94/62/EC)」에 따라 포장재의 필수요건, 유해 중금속 함량 제한, 포장재 폐기물의 회수·재활용 목표 및 회원국별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EU) 2025/40(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 PPWR)」은 2025. 02. 11. 발효되어 2026. 08. 12.부터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현행 법령으로 기존 지침을 대체하며, 발효일부터 적용일까지 18개월의 전환기간이 부여됨
- 동 규정은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플라스틱 포장재의 최소 재생원료 함량, 포장 최소화, 재사용·리필, 표시 및 생산자책임 요건을 규정하고 있으며, 각 요건은 규정에서 정한 일정에 따라 단계적으로 적용됨
- 최소 재생원료 함량은 2030년 기준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 30%, 일회용 음료수병을 제외한 접촉민감성 PET 포장재 30%, 그 밖의 접촉민감성 플라스틱 포장재 10%, 그 밖의 플라스틱 포장재 35%이며, 2040년에는 각각 65%, 50%, 25%, 65%로 상향됨
- 회원국 영역에서 최종사용자에게 포장재 또는 포장 제품을 최초로 제공하는 자는 설립지와 관계없이 해당 회원국의 생산자에 해당하며, 해당 회원국에 설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생산자책임 확대 관련 역내 대리인(authorised representative)을 선임하여야 함
- (도입동향)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규정(EU) 2025/40의 이행을 위해 재활용 가능성 평가방법, 재생원료 함량 산정·검증방법 및 통일된 포장재 표시 등에 관한 위임법령과 이행법령을 단계적으로 마련하고 있음

- **(현행 규정)** 영국은 「2024년 생산자책임의무(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The Producer Responsibility Obligations (Packaging and Packaging Waste) Regulations 2024)」에 따라 포장재 생산자 및 수입자 등록, 포장재 자료 보고, 재활용 가능성 평가, 재활용 의무 및 포장재 폐기물 처리비용 납부 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 의무 대상은 전년도 연간 매출액이 100만 파운드 이상이고 포장재 25톤을 초과하여 취급한 사업자이며, 매출액 200만 파운드 이상이고 50톤을 초과하는 경우 대규모 생산자로 분류됨
 - 포장재 폐기물 처리비용은 2025년 10월부터 부과되고 있으며, 2026~2027 회계연도부터 재활용 가능성 평가방법(Recyclability Assessment Methodology, RAM)에 따른 평가결과를 바탕으로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이 낮을수록 높은 분담금을 부과하는 차등 분담금 체계를 적용함
 - 재생 플라스틱 함량이 30% 미만인 완성된 플라스틱 포장재 구성요소에는 플라스틱 포장세(Plastic Packaging Tax)를 부과하고 있으며, 2026. 04. 01.부터 적용되는 세율은 톤당 228.82 파운드임
 - 다만 30% 기준은 의무적으로 사용하여야 하는 최소 재생원료 함량이 아니라 조세 부과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이며, 재생원료의 원산지를 한정하는 요건은 확인되지 않음
- **(도입동향)** 영국 재무부(HM Treasury)와 국세관세청(HM Revenue & Customs, HMRC)은 플라스틱 포장세 면제에 필요한 재생원료 함량 증빙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기계적 재활용 플라스틱을 함유한 포장재에 의무 인증을 도입하는 방안에 대해 2026. 08. 10.까지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있음

- (현행 규정) 캐나다는 연방 차원의 단일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보다 주·준주별 제도를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음
 - 온타리오주는 「블루박스 규정(O. Reg. 391/21, Blue Box Regulation)」에 따라 포장재, 종이제품 및 일부 일회용품의 수거·재활용 책임을 생산자에게 부과하고 있으며, 2021년 6월 규정 제정 이후 2023. 07. 01. 전환을 개시하여 2026. 01. 01.부터 생산자가 온타리오주 전역(극북 지역 제외)의 블루박스 서비스를 전면 책임지는 체계를 운영하고 있음
 - 생산자는 캐나다 거주 브랜드 소유자를 우선으로 하며 거주 브랜드 소유자가 없는 경우 온타리오주 거주 수입자가 생산자가 되고, 양자가 모두 없는 경우에는 소비자에게 제품을 판매한 소매업자가 책임을 부담함
 - 연방정부는 「캐나다 환경보호법 1999(Canadian Environmental Protection Act, 1999)」 제46조에 근거한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Federal Plastics Registry, FPR)를 운영하여 플라스틱 포장재 등을 캐나다에서 제조·수입하거나 시장에 출시하는 생산자에게 플라스틱의 종류·출처·수량 등에 관한 자료를 보고하도록 하고 있음
 - 개정 공고에 따라 단계 2·3 보고는 연기되었으며, 생산자는 2024년·2025년·2026년분에 대한 단계 1 자료를 계속 보고하여야 하고,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는 자료 수집·보고 제도로써 주·준주별 제도를 대체하는 연방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에는 해당하지 않음
 - 최소 재생원료 함량 의무 및 재생원료의 원산지를 한정하는 요건은 현행 규정에서 확인되지 않음
- (도입동향) 캐나다 환경기후변화부(Environment and Climate Change Canada, ECCC)는 2027년·2028년·2029년분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 자료를 계속 수집하기 위한 「캐나다 환경보호법 1999」 제46조 공고를 발령할 계획이며, 향후 보고대상과 보고항목을 구체화할 예정임

- 한편 플라스틱 포장재 등에 최소 재생원료 함량과 재활용 및
퇴비화 가능성 표시기준을 적용하는 규정안도 추진하였으나,
2026. 07. 기준 해당 규제계획은 보류된 상태임

2. 주요국 규제 수준 비교

구분	호주	EU	영국	캐나다
상위 법·프레임(전반)	「2026년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No Time to Waste) 법안」(상원 제출·제1독회 완료) 및 모법 「2020년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	「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EU) 2025/40」(2026.08.12. 적용, 지침 94/62/EC 대체)	「2024년 생산자책임의무(포장재 및 포장재 폐기물) 규정」, 플라스틱 포장세	주·준주별 제도 중심. 온타리오주 「블루박스 규정(O. Reg. 391/21)」, 연방 「캐나다 환경보호법 1999」 제46조
주요 규제부처	기후변화·에너지·환경·수자원부 (DCCEEW)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 및 회원국 소관 당국	환경식품농촌부(Defra), 플라스틱 포장세는 재무부(HM Treasury)·국세관세청(HMRC)	온타리오주 자원생산성회수기관(RPRA), 환경보호·자연보전·공원부(MECP) 감독/연방 환경기후변화부(ECCC)
사전 규제방식	규칙 제정 전 장관의 인정 절차(제품책임 기준 충족 등). 기업 대상 등록·인증 절차는 향후 규칙에서 확정	회원국별 생산자 등록. 해당 회원국에 설립되지 않은 생산자는 역내 대리인 선임	사업자 등록 및 포장재 자료 보고	온타리오주 생산자 등록, 연방 플라스틱 등록부 자료 보고
수범자 (의무 주체)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유통하는 책임자	회원국 영역에서 최종사용자에게 최초로 제공하는 자	전년도 매출액 100만 파운드 이상 및 포장재 25톤 초과 취급 사업자	캐나다 거주 브랜드 소유자 → 온타리오주 거주 수입자 → 소매업자 순
재생원료 함량 의무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 50% 이상	2030년 일회용 플라스틱 음료수병 30%, 접촉민감성 PET 포장재(음료수병 제외) 30%, 그 밖의 접촉민감성 플라스틱 10%, 그 밖의 플라스틱 35% / 2040년 각각 65%·50%·25%·65%	의무 없음, 재생 플라스틱 30% 미만 시 플라스틱 포장세 부과(2026.04.01. 기준 톤당 228.82파운드)	확인되지 않음
재활용 가능성 요건	2030년까지 모든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성 확보, 플라스틱 포장재 70% 재활용·퇴비화	재활용 가능성 요건 규정(단계적 적용)	재활용 가능성 평가방법(RAM)에 따른 평가	설계 요건 없음. 물질 범주별 회수 목표 부과(유연 플라스틱 2026~2027년 10%, 2028~2031년 15%, 2032년 이후 25%), 2026~2027년은 "최선의 노력" 기준
시행 유예 기간	국왕 재가 다음 날 시행, 제도는 그로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발효(2025.02.11.)부터 적용(2026.08.12.)까지 18개월	의무별 단계적 시행. 자료 보고 선행 후 처리비용 2025.10.~, 차등 분담금 2026~2027 회계연도~	규정 제정(2021.06.) 후 2023.07.01. 전환 개시, 2026.01.01. 전면 책임

1. 기술규제 영향 평가 검토

○ 규제 개요

항목	내용
규제명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for Packaging (No Time to Waste) Bill 2026
규제기관	Australian Parliament
법적근거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
통보문서	미통보
주요목적	연방 정부가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국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기 위함

○ 주요 요구사항

요구사항	검토결과
규칙 제정 의무	장관은 모법 제92조의 목적상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에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는 규칙을 모법에 따라 제정하여야 하며, 해당 요건은 장관이 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한다고 인정하는 내용으로 함
2030년 최소 목표 달성	호주에서 제조·사용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에 대하여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성 확보, 플라스틱 포장재 70% 재활용·퇴비화, 재활용 함량 50% 이상(그중 호주산 30% 이상) 및 문제성·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이 2030년까지 달성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도의 목표로 함
라벨 정보 표시	포장 제품의 라벨에 해당 제품의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포장재의 올바른 폐기에 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것을 제도의 목표로 함
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책임자가 포장재를 줄이고 에코디자인을 개선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제도의 목표로 하며, 그 예시로 재활용 가능성 또는 제조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 납부 요구 방식을 제시하되 해당 요건은 과세에 해당하여서는 안 됨

○ 평가 항목별 영향 분석

평가항목	평가결과
필요성	본 규제는 포장재의 책임자가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관리 책임을 지도록 하고, 포장재 및 미사용 원료 플라스틱의 사용 감소와 자원 회수·재활용률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음 또한 연방 정부가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국가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어, 규제 목적 자체는 확인됨
비차별성	본 규제의 수범자인 책임자는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로 규정되어 있어, 국내 사업자와 수입 사업자를 형식적으로 구분하지 않음 다만 2030년 최소 목표 중 재활용 함량 50% 이상 가운데 30% 이상을 호주산 재활용 함량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요건은 재생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는 구조이므로, 수입 포장재 및 국외 재생원료에 대한 내국민대우 관점의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최소무역 제한성	본 규제는 포장재의 제조·수입을 금지하는 방식이 아니라 제도가 달성하여야 할 목표를 제시하고 구체적 요건을 향후 규칙에 위임하는 구조이므로, 무역에 미치는 영향은 규칙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됨 다만 제도의 목표에 호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성장 지원이 함께 규정되어 있어 호주산 재활용 함량 요건이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조치인지 검토할 여지가 있으며, 제도 시행일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 후로 설정되어 있어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기까지의 기간이 3개월에 그침
투명성	본 규제는 의회 제출 및 제1독회를 거쳐 법안 원문이 공개되어 있어 제도의 목표와 2030년 최소 목표 등 기본 내용은 확인 가능함 다만 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할 구체적 요건, 적용 대상 제품의 범위, 비용 부담 방식 및 위반 시 제재의 적용 범위가 모두 향후 제정될 규칙에 위임되어 있고, 규칙의 제정 일정과 의견수렴 절차는 확인되지 않음 아울러 모법이 규칙 제정 최소 12개월 전에 해당 제품을 장관의 우선순위 목록에 통보하도록 하거나 통보 없이 규칙을 제정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것을 요구한 요건의 적용을 배제하고 있어, 기업이 규제 도입 시점과 내용을 사전에 예측하기 어려운 것으로 분석됨

○ 경제성 분석

- 본 법안은 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을 직접 규정하지 않고 향후 제정될 규칙에 위임하고 있어, 현 단계에서 기업이 부담하게 될 비용은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제도의 목표로 제시된 사항을 기준으로 볼 때, 재활용 함량 확보를 위한 원료 전환, 재활용 가능한 재질로의 포장재 설계 변경, 라벨 표시 변경 및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 납부 등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특히 재활용 함량 50% 이상 가운데 30% 이상을 호주산 재활용 함량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요건이 규칙에서 그대로 구체화될 경우, 국외에서 조달한 재생원료로는 해당 부분을 충족할 수 없어 원료 조달처 변경 및 조달 단가 상승이 발생할 수 있음
- 다만 최소 목표의 달성 시한이 2030년으로 설정되어 있고 규칙에 경과적 성격의 사항을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비용의 발생 시기와 규모는 규칙의 내용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분석됨

○ 예상되는 기업애로 요인 분석 및 파급효과

구분	영향 유형	구체적 발생 원인	영향경로
원료 조달	조달처 제한 및 조달 단가 상승	재활용 함량 50% 이상 가운데 30% 이상을 호주산 재활용 함량으로 충족하도록 하는 요건	호주산 재활용 함량 요건 → 국외 조달 재생원료로는 요건분 충족 불가 → 호주 현지 조달처 확보 및 조달 단가 상승
제품 설계 및 제조	포장재 재질·구조 변경	모든 포장재의 재사용·재활용 또는 퇴비화 가능성 확보, 적절한 경우 재활용 저해 재료·첨가제의 금지 또는 단계적 퇴출, 문제성·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의 단계적 퇴출	재질 요건 강화 → 포장재 재설계 및 생산 설비 조정 → 개발 기간 및 생산 비용 증가

구분	영향 유형	구체적 발생 원인	영향경로
표시	라벨 변경 및 표시 정보 확보	포장 제품의 라벨에 해당 제품 포장재의 환경 영향 및 올바른 폐기에 관한 정보를 표시하도록 하는 요건	표시 요건 도입 → 표시 정보 확보 및 라벨 변경 → 인쇄판 교체 및 기존 재고 처리 비용 발생
행정	수수료 부담 및 증빙 관리 소요	재활용 가능성 또는 제조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되는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	수수료 부과 → 재활용 가능성 및 제조 수량 산정 → 증빙 자료 관리 체계 구축 및 수수료 납부

○ 결론 및 권고사항

- (규제영향) 책임자가 이행하여야 할 요건이 향후 제정될 규칙에서 확정되므로, 현 단계에서 기업에 미치는 영향의 범위와 수준은 확정되지 않음
- 호주산 재활용 함량 요건은 재생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차등이 발생하는 구조로, 규칙에서 그대로 구체화될 경우 호주로 수출되는 포장재 및 포장 제품의 원료 조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포장재 재질 변경, 라벨 표시 변경 및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 납부에 따른 비용이 발생할 수 있음
- (권고사항) 본 법안은 상원에 제출되어 제1독회를 마친 단계이므로, 심의 경과 및 제정 여부를 지속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 호주로 수출하는 기업은 현지 수입자가 책임자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고, 사용 중인 포장재의 재질 및 재생원료 사용 현황을 사전에 파악해 둘 필요가 있음

2. TBT 협정문 위배 여부 판단

- 본 법안은 상업적 목적으로 제품을 제조·수입 또는 유통하는 책임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어 명시적인 차별, 중복 적합성평가 또는 외국 인증 불인정 요소는 확인되지 않음
- 다만, 재활용 함량 50% 이상 가운데 30% 이상을 호주산 재활용 함량으로 충족하도록 하여 재생원료의 원산지에 따라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지며, 제도가 이 법 시행일부터 3개월이 종료된 다음 날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여 한국 수출기업에 원료 조달처 변경 부담과 규제 불확실성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음

연번	무역기술장벽 유형	위반사항
1	국제표준과 일치화되지 않은 표준	해당사항 없음
2	자국 제품과 수입제품의 차별적 대우	위반 가능성이 있음
3	적합성평가절차의 중복	해당사항 없음
4	불필요한 무역방해 초래	위반 가능성이 있음
5	적용되는 법률 및 기술규정의 투명성 부재	해당사항 없음
6	규제 도입을 사전에 공지하지 않음	해당사항 없음
7	규제 발표와 시행 사이에 적절한 시행 유예기간 부재	위반 가능성이 있음
8	외국의 유사인증 불인정 등	해당사항 없음

□ 대응 방안

- 자사 포장재의 재질 및 재생원료 사용 현황을 우선 확인하고, 기업 규모와 호주 수출 거래 구조에 따라 규칙 제정 단계의 의견 제출 및 요건 확정 이후의 대응 체계를 단계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음

구분	대응 핵심	대응 방안
중소 기업	계약상 책임 확인 및 지원기관 활용	① 제품별 포장재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재생원료 함량 우선 확인 ② 호주 현지 수입자가 책임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요건 충족 및 비용 부담의 주체를 계약 단계에서 사전 협의 ③ 지원기관의 정보 제공 및 상담 서비스를 활용하여 초기 대응비용을 감축
중견 기업	포장재 사양 점검 및 조달선 검토	① 호주 수출제품별 포장재 재질, 재활용 가능 여부 및 재생원료 함량을 품목별로 정리하여 목표 수준에 이르지 못한 품목을 우선 식별 ② 호주산 재활용 함량 요건이 구체화될 경우에 대비하여 현지 재생원료 조달 가능성을 사전 검토 ③ 규칙 확정 후 변경사항을 관련 부서와 포장재 공급업체에 신속히 반영할 수 있도록 내부 관리절차 정비
대기업	공급망 및 규칙 제정 대응	① 협력업체 및 포장재 공급업체로부터 포장재 재질과 재생원료 함량 관련 자료를 일관된 형식으로 확보 ② 호주 법인·수입자·유통사와 역할을 분담하여 의견 제출 및 요건 확정 이후의 대응 체계를 마련 ③ 규칙 제정 시 의견수렴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 호주산 재활용 함량 요건의 산정 방식 및 경과 조치에 관한 의견을 개진

- 본 보고서는 우리 수출기업의 무역기술장벽 대응을 위한 해외 기술규제 정보를 분석 및 제공하기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 위 규제와 관련된 정보는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knowtbt.kr)에서 열람 가능합니다.
- 또한, 추가 문의사항 또는 애로사항이 있으실 경우, 해외인증기술규제정보포털의 상담 신청을 통해 접수받고 있습니다. (홈페이지 경로: Knowtbt.kr 접속 → 상담·정보조사 신청 → 상담 신청)

□ **참고자료**

○ (관련 법령)

- 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for Packaging (No Time to Waste) Bill 2026²⁾
- Recycling and Waste Reduction Act 2020³⁾
- National Environment Protection Council Act 1994⁴⁾

2) https://www.aph.gov.au/Parliamentary_Business/Bills_Legislation/Bills_Search_Results/Result?bId=s1494

3) <https://www.legislation.gov.au/C2020A00119/latest/text>

4) <https://www.legislation.gov.au/C2004A04799/latest/text>

2025-2026

호주 연방 의회

상원

제출 및 제1독회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No Time to Waste) 법안 2026

2026년 제 호

(위시-월슨 상원의원)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 및 관련 목적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목차

제1부—예비규정		1
1	약칭	1
2	시행	2
3	이 법의 목적	2
4	정의	2
제2부—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3
5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	3
6	국가 환경 보호 조치	4
7	주 및 준주 법률과의 관계	4
8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정기 검토	5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 및 관련 목적을 규정하기 위한 법률안

호주 의회는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제1부—예비규정

1 약칭

이 법은 2026년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No Time to Waste*)법이라 한다.

2 시행

- (1) 표의 제1열에 명시된 이 법의 각 조항은 표의 제2열에 따라 시행되거나 시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2열의 그 밖의 문구는 그 문구에 따라 효력을 가진다.

시행 정보		
제1열	제2열	제3열
조항	시행	날짜/세부사항
1. 이 법 전체	이 법이 국왕의 재가를 받은 다음 날	

참고: 이 표는 처음 제정된 이 법의 조항에만 관련된다. 이 표는 이 법의 이후 개정 사항을 다루기 위해 개정되지 않는다.

- (2) 표의 제3열에 있는 정보는 이 법의 일부가 아니다. 이 열에는 정보가 삽입될 수 있으며, 이 열의 정보는 이 법의 공표본에서 수정될 수 있다.

3 이 법의 목적

이 법의 목적은 연방 정부가 포장재에 대한 통일된 국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수립하도록 규정하는 데 있다.

4 정의

- (1) 이 법에서: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extended producer responsibility scheme): 제5조 제(1)항을 참조한다.

모법(main Act)이란 2020년 재활용 및 폐기물 감축법을 말한다.

장관이란 모법을 관장하는 장관을 말한다.

목표: 제5조 제(2)항을 참조한다.

책임자란 제품에 대하여, 의문의 여지를 없애기 위해 포장재를 포함하여, 상업적 목적으로 해당 제품을 제조, 수입 또는 유통하는 자를 말한다.

제도 시행일이란 이 조가 시행되는 날부터 시작되는 3개월의 기간이 종료된 다음 날을 말한다.

- (2) 이 법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모법의 목적상 정의된 용어는 이 법에서 그 법에서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제2부—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5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

- (1) 장관은 모법 제92조의 목적상, 장관이 그 제도의 목표를 가장 잘 달성한다고 인정하는 포장재에 대한 제도(**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를 수립하는 데 필요한 요건을 명시하는 규칙을 모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도의 목표

- (2)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a) 포장재의 책임자가 해당 포장재의 전체 수명주기에 걸쳐 해당 포장재의 관리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보장하는 것;
 - (b) 포장재 및 버진 플라스틱의 사용 감소를 보장하는 것;
 - (c) 재활용을 저해하는 재료 및 첨가제가 적절한 경우 포장재 제조에서 금지되거나 단계적으로 퇴출되도록 보장하는 것;
 - (d) 포장재가 해당 포장재의 에코디자인과 관련된 모범 관행 기준에 따라 제조되도록 보장하는 것;
 - (e) 자원 회수 및 재활용률을 높이고 호주 국내 재활용 산업의 성장을 지원하는 것. 여기에는 호주에서 제조, 사용 또는 판매되는 포장재와 관련하여 다음의 최소 목표가 2030년까지 달성되도록 보장하는 것이 포함된다:
 - (i) 모든 포장재는 플라스틱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 가능하거나, 재활용 가능하거나, 퇴비화 가능해야 한다;
 - (ii) 모든 플라스틱 포장재의 70%는 재활용되거나 퇴비화되어야 한다;
 - (iii) 모든 포장재는 플라스틱 여부와 관계없이 최소 50%의 재활용 함량을 포함해야 하며, 그중 최소 30%는 호주산 재활용 함량이어야 한다;
 - (iv) 모든 문제성 및 불필요한 일회용 플라스틱 포장재는 단계적으로 퇴출되어야 한다;
 - (f) 포장 제품의 라벨에 해당 제품의 포장재가 환경에 미치는 영향 및 해당 포장재의 올바른 폐기에 관한 명확하고 정확한 정보가 포함되도록 보장하는 것;
 - (g) 포장재의 책임자가 해당 포장재를 줄이고 해당 포장재의 에코디자인을 개선하도록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 예를 들어 해당 책임자가 해당 포장재의 재활용 가능성 또는 제조 수량을 기준으로 산정된 에코모듈레이션 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을 포함한다;
 - (h) 이 제도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소비자 교육 및 인식 제고를 지원하는 것.

제6조

제도 요건의 적용 대상

- (3) 모법 제92조를 제한하지 않고, 장관은 특정 제품의 모든 책임자 또는 특정 책임자에 대하여 필요한 요건을 명시할 수 있다.

참고: 종류별 사람 또는 제품의 명시에 대해서는 2003년 입법법 제13조 제(3)항을 참조한다.

제도의 시행

- (4) 규칙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제도 시행일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제정되어야 한다.
- (5) 그러나 제(4)항은 규칙이 경과적 성격의 사항을 다루는 것을 방해하지 않는다. 여기에는 유보 조항 또는 적용 조항을 규정하는 것이 포함된다.

모법의 적용

- (6) 모법 제93조 제(1)항 (d)호는 이 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칙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참고 1: 모법 제93조 제(1)항 (d)호는 해당 제품과 관련된 규칙이 제정되기 최소 12개월 전에 장관의 우선순위 목록에 제품이 통보되는 것에 관한 것이다.

참고 2: 이 법의 어떠한 내용도 규칙에 대한 그 밖의 제한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예를 들어 모법의 다음 조항에 따른 제한이 이에 해당한다.

- (a) 제92조 제(2)항(모법의 목적과 관련된 특정 조치에 관한 사항);
- (b) 제93조 제(1)항 (a)호부터 (c)호까지(제품 책임 기준의 충족 및 목적의 증진 등에 관한 사항);
- (c) 제94조(헌법적 관련성에 관한 사항).

재정적 인센티브는 과세가 아님

- (7) 제(2)항 (g)호에 언급된 재정적 인센티브와 관련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규칙에 명시된 요건은 과세에 해당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6 국가 환경 보호 조치

1994년 국가 환경 보호 위원회법 제20조 제(2)항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수립으로 인해 국가 환경 보호 조치가 변경되거나 폐지되는 경우에는 해당 변경 또는 폐지와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는다. 이 경우 국가 환경 보호 조치는 그 법의 의미 내에서의 국가 환경 보호 조치를 말한다.

7 주 및 준주 법률과의 관계

- (1) 제5조 제(1)항의 목적을 위해 제정된 규칙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가 해당 규칙에서 규정하는 주 또는 준주 법률을 배제하고 적용되도록 의도된 것임을 규정할 수 있다.
- (2) 그러나 이 조 제(1)항은 주 또는 준주 법률이 달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적용을 받는 제품의 책임자에게 해당 제품과 관련하여 요건을 부과하게 되는 범위에서만 적용된다.

8 포장재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정기 검토

- (1) 장관은 생산자 책임 확대 제도의 운영에 대한 정기 검토가 실시되도록 해야 한다.
- (2) 첫 번째 검토는 제도가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작되는 3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3) 이후의 각 검토는 이전 검토가 완료된 후 5년의 기간이 종료되기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4) 각 검토를 실시하는 자는 장관에게 해당 검토에 관한 서면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5) 장관은 각 검토 보고서의 사본이 장관이 해당 보고서를 접수한 후 각 원의 15 회의일 이내에 의회 각 원에 상정되도록 해야 한다.